## 법인 콘도 운영 지침

제정 2023.6.29

[노사협력부 042-600-818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하다.

제2조(관리) 회원권 관리는 각 호의 부서에서 담당한다

- 1. 회원권의 구매 및 재산세 납부 업무 : 급여담당부서
- 2. 회원권 이용신청, 관리 및 정기점검 등 운영 관련 업무 : 노사담당부서

제3조(이용자격) ① 공사에 재직중(휴직자 포함)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임직원은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직무복귀시까지 회원권 이용을 제한한다.

제4조(이용신청) 회원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정한 콘도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배정) ① 하계휴가 외에는 회원권 이용을 신청한 직원은 콘도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② 하계휴가 기간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실적이 낮은 직원을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입회하에 콘도예약시스템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배정하여 그 결과를 게시한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회원권은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

- ② 회원권을 임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대여 및 양도 할 수 없다.
- ③ 제5조의 회원권을 배정받은 자가 개인사유 등 부득이하게 회원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변경 혹은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 회원권 관련 객실 및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물의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제재)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간, 제6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회원권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혹은 취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예외승인요청서[별표]를 통해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회원권 이용의 적정성 및 규정위반 등을 점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법인콘도 제재 예외 승인요청서				
① 예약자	•소 속: •사 번: •성 명:			
② 콘도예약사항	• 예 약 일 : • 대상콘도 : • 이용기간 :			
③ 소 명				
※ 증빙문서 첨부 신 청 인 소속부(팀)장				
신청인은 상기의 사유로 부득이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합니다.		결		
신청일 : 20		개		
상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 예외승인		결	담 당	노사협력부장
□ 예외불승인 (사유 :	)	재		